

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

연구교류협력 협정서

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은 연구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호혜원칙에 의거,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며, 이에 필요한 운영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협정서 2통을 작성,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 하기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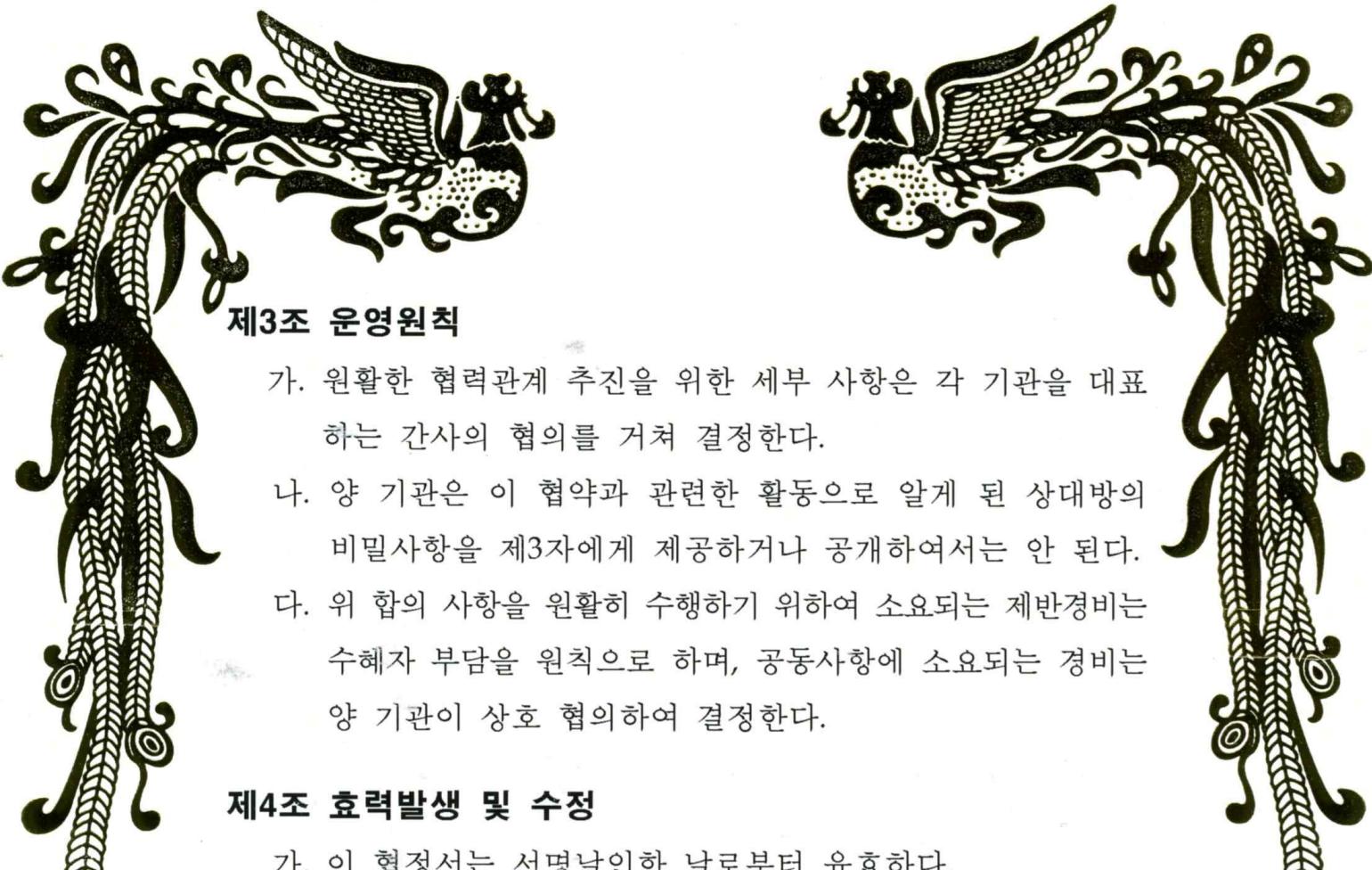
제1조 목적

양 기관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, 공동관심 분야의 협동 연구 및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등 양 기관의 공동 이익을 실현하도록 노력한다.

제2조 협력분야

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한다.

- 가. 공동 관심분야 연구의 공동 신청 및 추진 등 협동 연구 추진
- 나. 공동 관심분야 기본과제의 협동연구
- 다. 연구보고서, 출판물 및 기타 소장 자료의 교환
- 라. 지역농업 연구관련 정보의 공유
- 마. 학술세미나의 공동개최
- 바. 연구인력 교류
- 사. 기타 양 기관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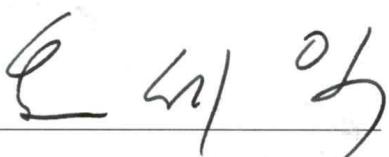
제3조 운영원칙

- 가. 원활한 협력관계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간사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.
- 나. 양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한 활동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.
- 다. 위 협의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, 공동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 효력발생 및 수정

- 가. 이 협정서는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.
- 나. 이 협정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,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협의 중단 통보가 없는 한 3년간 자동 연장된다.
- 다. 이 협약의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수정과 보완을 결정한다.

2010년 2월 4일


원장 오세익

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119-1

KREI
한국농촌경제연구원


원장 유덕상

제주도 제주시 청사2로 8(도남동)

 **제주발전연구원**
Jeju Development Institute